

의안번호	2201981
의 퇴 인	정성호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계번호	24F2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10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이하 ‘톤세’)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517억원, 2035년 6,032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
까지 11년간 총 6조 5,482억원(연평균 5,9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35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104조의10)	-517	-6,548	-6,548	-6,548	-6,548	-6,548	-6,548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6,548	-6,548	-6,548	-6,032	-65,482		-5,95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10년 연장 - (적용기한) 2024.12.31. → 2034.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
 -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가 2026년에 이루어지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하지만, 중간예납으로 인해 세수효과 중 일부가 2025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가정
- 향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최근 10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
 - 최근 10년(2014~2023년)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6,548억원 수준
 - 최근 10년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연도별로 186억원~4조 2,777억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톤세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아니라, 선박의 크기 및 적재능력에 따라 계산된 선박 순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제도임
 - 톤세 적용을 신청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
 - 해운소득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선박별로 순톤수 등으로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비해운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적용

1) 외항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화물의 유치 등 관리, 외항해상운동활동 시설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을 의미

[그림 1]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산출 방식

과세 표준	비해운소득 법인세법상 익금 - 법인세법상 손금	×	법인세율	=	법인세액
	해운소득 $\Sigma \text{개별선박순톤수} \times \text{톤당 1운항일 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주: 선박은 해당 기업이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을 의미함

□ (감면실적) 한국해운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톤세 적용으로 발생한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총 8.2조원 수준

○ 최근 10년(2014~2023년)간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6,548억원 수준으로 발생

– 2022년 및 2023년은 물동량 확대 및 국제 운임지수 급등 등으로 해운기업의 실적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액이 증가

[표 2] 톤세 적용으로 인한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

(단위: 억원)

신고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액 (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신고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액 (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2006년	3,684	424	3,260	2015년	2,081	1,316	765
2007년	2,285	689	1,596	2016년	2,246	1,435	811
2008년	3,591	1,335	2,257	2017년	660	233	427
2009년	7,922	1,614	6,309	2018년	2,633	1,451	1,182
2010년	1,401	680	721	2019년	1,231	1,045	186
2011년	2,233	756	1,476	2020년	2,099	1,741	358
2012년	1,429	1,080	349	2021년	2,539	1,151	1,388
2013년	2,180	1,142	1,038	2022년	18,421	1,935	16,486
2014년	2,210	1,109	1,101	2023년	46,267	3,489	42,777

주: 협회에 등록된 선사 기준으로 각 사가 계산한 값을 취합한 것임

자료: 한국해운협회 제출자료

(2) 추계방법

- (추계방법) 향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최근 10년의 연평균 감면실적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등 납부시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산정
- 향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2014~2023년간 연평균 감면액인 6,548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동 제도의 최근 10년간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뚜렷하지 않음
 - 매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면액은 납부시점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와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로 구분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해 3~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의 비중(7.9%)은 2019~2022년간 총부담세액 대비 중간예납세액 비중과 중간예납시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추정
 - 총부담세액 대비 중간예납세액 비중: 2019~2022년 평균 33.2%
 - 중간예납시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세액을 납부하는 비중: 2019~2022년 평균 23.8%
 - ※ $7.9\% = 33.2\% \times 23.8\%$
 - 따라서, 사업연도별 연평균 감면액(6,548억원)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 517억원과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세수효과 6,032억원으로 구분
 - $517\text{억원} = 6,548\text{억원} \times 7.9\%$

[표 3]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

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	2025	2026	2027	2028	...	2034	2035
2025	-517	-6,032					
2026		-517	-6,032				
2027			-517	-6,032			
...							
2034					...	-517	-6,032
세수효과 계	-517	-6,548	-6,548	-6,548		-6,548	-6,032

(3) 추계결과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이하 ‘톤세’)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517억원, 2035년 6,032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
까지 11년간 총 6조 5,482억원(연평균 5,9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35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10년 연장(안 제104조의10)	-517	-6,548	-6,548	-6,548	-6,548	-6,548	-6,548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6,548	-6,548	-6,548	-6,032	-65,482		-5,95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